충남대학교 감사시행세칙

[시행 2019.7.1.] [감사시행세칙 2019.5.24., 일부개정]

목차

제1장	총칙	1 ~	6	
제2장	감사특별위원회	7 ~	, 1	4
제3장	감사	15	~	23
제4장	징계	24	~	28
제5장	규칙	29	~	31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세칙은 학생자치기구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으로 학우들의 자치기구로서 신뢰를 쌓아가기 위하여 감사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본 세칙은 총학생회, 총대의원회, 교지편집위원회, 총동아리연합회,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대의원회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3조(원칙) 감사의 시행은 「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」제49조제5항, 제49조제6항, 제65조제2항제4호, 제65조제2항제5호, 제118조에 규정된 사항과 본 세칙에 의거한다.

제4조(의무) 감사특별위원회와 위원들은 감사업무와 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임을 자각하고 학우들의 대리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조직) 「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」 제65조제2항제4호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둔다.

제6조(감사구분) ① 감사는 정기감사, 임시감사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감사는「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」제118조에 규정된 사항에 의해서 실시한다.
- ③ 임시감사는 제보, 대자보, 연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실시한다.

제2장 감사특별위원회

제7조(명칭) 본회는 충남대학교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8조(지위) ① 본회는 총대의원회의 특별기구이다.

② 본회는 직무와 운영에 있어서독립의 지위를 가지며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제9조(권한) 본회는 본 세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,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다.

- 1. 선거공약 감사(당선인)
- 2. 각 자치기구의 사업 감사
- 3. 모든 재정 감사

제10조(구성) ① 본회는 중앙 감사특별위원회(이하 "중앙 감특위"라 한다)와 단과대 감사특별위원회(이하"단과대 감특위"라 한다)로 구성한다.

- ② 제1항의 중앙 감특위원은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의장단의 승인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
- ③ 중앙 감특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.
 - 1. 총 상임위원(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2/3 이상과 총대의원회 감사국장으로 구성한다. 단, 총대의원회 감사국장 부재 시 사무국장을 제외한 집행부 중 1인을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.
 - 2. 총학생회의 감사는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, 감사국장, 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.
 - 3. 총대의원회의 감사는 상임위원 3인과 중앙운영위원 2인(총 상임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)으로 구성한다. 단, 중앙운영위원은 총대의원회의 감사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고, 의결권을 가진다.
- ④ 단과대 감특위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구성한다.

제11조(구성시기) ① 중앙 감특위는 정기감사 시행 20일 전까지 구성하고 임시감사 시행에 대하여서는 구성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.

② 단과대학 감특위는 정기감사 시행 15일 전까지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장이 구성한다.

제12조(권한대행) ① 중앙 감사특별위원장(이하 "감특위원장"이라 한다)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시 총대의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을 권한 대행으로 선출하고 상임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 받아야 한다.

② 단과대 감사특별위원장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과대 감사특별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 시 감사권은 중앙 감특위에서 수행한다.

제13조(임기) 본회의 임기는 해당 감특위의 구성일로부터 결과 공고 일까지로 한다.

- 제14조(의결) 본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재적 감특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8호의 경우 재적 감특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1.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
 - 2.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
 - 3.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대한 총대의원회의 건의
 - 4.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
 - 5.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
 - 6. 재심의에 관한 사항
 - 7. 결산 감사 보고 및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

제3장 감사

- 제15조(대상) 본회의 감사 대상(이하 "피감사기구"라 한다)은 다음과 같다.
 - 1. 중앙 감특위의 감사 대상은 「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」제7조(기구) 중 총학생회, 총대의원회, 교지편집위원회, 총동아리연합회, 각 단과대학 학생회로 한다.
 - 2. 단과대 감특위의 감사 대상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생회 및 단과대학 대의원회로 한다.
- 제16조(감사시기) ① 정기감사는 매 분기별로 총 4회 시행한다.
 - ② 임시감사는 감사가 결정된 경우에 시행하며 본회 구성 후 2주일 이내에 시행한다.
- 제17조(감사일정) ① 본회는 정기감사의 일정 통보와 자료제출에 대한 공문을 감사 시행 15일전까지, 임시감사의 경우 7일 전까지 피감사기구에 통보한다. 단, 제보에 의한 임시감사의 경우 1일 이전까지 통보한다.
 - ② 제1항 단서 조항의 경우에 단과대학 학생회 및 대의원회에 대한 임시감사는 통보하지 않고 실시 할 수 있다.
 - ③ 피감사기구는 본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해당 일까지 본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제3항의 자료 제출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회에 기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. 단, 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.
 - ⑤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는 제출기한 이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확인을 득하고 확인서를 제출한다.
 - 1. 총학생회, 총대의원회, 총동아리연합회, 교지편집위원회의 감사 자료는 총대의원회 의장단에서 확인하다.
 - 2. 각 단과대학 학생회 및 대의원회의 감사 자료는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장이 확인한다.
- 제18조(기준) 감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한다.
 - 1. 학우들을 위한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.
 - 2. 선거 당시 공약에 대한 이행 정도에 대하여 평가한다.
 - 3. 계획한 사업의 이행 정도를 본다.
 - 4. 학생회칙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.
 - 5.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?
 - 6. 회계보고서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으며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가?
 - 7. 간이영수증(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한 항목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등록증사본, 세부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, 계좌이체 명세표를 첨부한다. 이하 같다) 비율은 감사 해당 기간 내 전체 지출의 5% 이내로 한다.
 - 8. 제7호의 간이영수증 비율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외항목을 정할 수 있다.
 - 가. 피감사기구는 간이영수증 비율 예외항목 요청을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 최초 결제일의 3일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사업의 시행이 최초 결제일 이전인 경우 사업 시행 3일 전까지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한다.
 - 나. 예외항목에 대한 의결은 총 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 - 9. 재정의 남용, 낭비, 잘못된 계약이나 구매 행위는 없었는가?
- 10. 수입과 비교해 볼 때 지출은 적당한 것인가?
- 11. 자치기구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학생들의 의사수렴을 거쳤는가?
- 12. 기타 감사와 관련된 사항
- 제19조(감사자료) 본회는 피감사기구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제출받는다. 자료는 필수 감사자료와 기타 감사자료로 구분한다.
 - ① 필수 감사자료
 - 1. 사업계획서(행사별)
 - 2. 사업평가서(행사별)

- 4. 통장사본
- 5. 영수증철
- 6. 회식관련서류(회식계획서, 회식평가서)
- 7. 수익사업에 관한 상세자료(업체, 내역 등)
- 8. 공약 시행 및 진행과정(파일을 포함하여 제출)
- 9. 간행물(견본)
- 10. 공문철(수발신, 내부결재)
- ② 기타 감사자료
 - 1. 계좌이체 항목에 대한 상세자료
 - 2.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본회에서 요청한 자료

제20조(감사방법) ① 감사는 선거공약 감사, 사업 감사, 회계 감사로 구분하며 제출 서류의 심사에 의한다. 단, 본회의 필요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를 포함한 요청을 할 수 있다.

- ② 선거공약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.
 - 1. 실질적인 공약 시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자치기구의 장은 선거공약에 준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, 보고서 형식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2. 본회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, 공약준수사항을 평가한다.
- ③ 사업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.
 - 1. 피감사기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.
 - 2. 사업계획서는 각 사업의 최초 결제일의 3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목적과 세부계획, 예상 소요예산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단, 사업의 시행이 최초 결제일 이전인 경우 사업 시행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.
 - 3. 제2호의 사업계획서의 경우에 업무에 관련된 사무용품, 비품, 소모품 등의 구입 또는 수리에 대하여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 - 4. 사업평가서는 각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결과와 사업 관련 세부예산 집행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 단, 장기사업의 경우, 해당 정기 감사 시행 공고일까지의 사업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.
 - 5. 모든 사업실시에 대하여 세입.세출 계산서, 영수증철을 감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.
 - 6. 모든 사업실시에 대한 영수증에는 항목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단, 세부항목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수증 철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한다.
 - 7. 사업실시에 대한 모든 인쇄물 제작 시 사업계획서에 초안, 사업평가서에 최종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8. 사업실시에 대한 사전비용(유류비, 급양비를 포함한 사업실시 이전의 사전답사비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답사규모에 적당한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.
 - 9. 사업실시에 대한 학생회비로 집행하는 회식은 학기별 1회로 두며, 회차당 1인 회식비는 15,000원을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그 대상은 집행부에 한한다. 단, 차기 학생자치기구 임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의 경우 예외로 둔다.
 - 10. 회식의 경우에는 계획서와 평가서를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11. 모든 사업실시에 대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집행은 금한다.
- ④ 회계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.
 - 1. 「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」제108조(재원), 제109조(자체조달경비), 제114조에 규정된 경비를 포함한 피감사기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재정을 대상으로 한다.
 - 2. 예산 현금운용 및 현금인출 후 집행은 금하고, 예산의 집행은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.

둘 수 있다.

- 5. 기간은 이전 감사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해당 감사 공고 일까지로 한다.
- 6. 수익사업에 관하여 상세 자료(업체, 내역 등)를 제출하여야 한다. 수익사업시행(계약) 전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후원계약, 축제 주점운영등 기타 교내 수익사업을 포함한다.
- 7. 제18조제7호에 따라 계좌이체는 간이영수증에 포함되며 반드시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. 단,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간이영수증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8. 학교 구성 원내 계좌이체의 경우 간이영수증에 포함되지 않으며, 당사자의 수령 확인서를 작성한다.
- 9. 제18조제8호에 따라 카드결제, 전자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집행의 경우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외항목으로 인정한다.
- 10. 제9호의 예외항목은 집행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새내기 새로 배움터와 이에 준한다고 본회에서 인정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새내기 새로 배움터 관련 숙박비, 버스대여비, 주류구매비, 무대설치비, 의류 구입비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, 세부계약서, 계좌이체 명세서, 사업 계획서, 사업평가서 등 자세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.
- 11. 제9호에 따른 예외항목 인정은 본회에서 의결하여 인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- 12. 「충남대학교 총학생회칙」제117조에 규정된 2학기 결산보고서 작성 이후의 예산은 각 신임 기구로 이월하고 당사자의 확인서를 작성한다. 또한, 결산보고서 작성 이후의 진행하는 사업의 제반서류는 신임 기구로 이월하여야 한다.
- ⑤ 제출 서류의 심사에 의한 감사 종료 이후 필요에 따라 실사를 포함한 기타 추가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.
- 단, 이 경우에 추가 감사 이전에 피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.
- 제21조(감사결과) ① 본회는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감사기구의 관계자(회장과 부회장, 해당 기구 집행부 중에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필요한 증언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② 본회는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면 피감사기구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필요한 증언을 받을 수 있고, 필요한 감정(鑑定)을 위촉할 수 있다.
 - ③ 감사 결과에 대한 미비점은 감사 날로부터 익일 이내에 해당 피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.
 - ④ 피감사기구의 장은 통보받은 미비점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소명하여야 한다.
 - ⑤ 본회는 미비점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 자료와 제출된 추가 자료, 기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피감사기구의 감사 결과를 확정한다.
- 제22조(결과보고) ① 본회는 감사 시행이 완료된 후 제출된 감사 결과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피감사기구의 장과 감사 주체의 서명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감특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 - ② 감특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반드시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 후, 언론 매체를 통하여 학우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자료공개 및 보존) ① 본회는 감사 결과보고서, 감사자료, 회의록을 포함한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고 보관하여 학우들의 요청이 있을 시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.
 - ② 자료의 보존기한은 최소 다음 3개년으로 한다.

제4장 징계

제24조(목적) 징계의 목적은 단순히 피감사기구를 문책하고 벌하는 데에 있지 않으며,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반성 및 전진의 계기를 주어서 사업을 보다 발전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.

제25조(사유)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를 결정한다. 단, 징계의 결정은 징계 사유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기준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
- 2.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미비하였을 경우 주의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.
- 3. 제출된 자료의 내용의 미비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작성하였을 경우 경고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.
- 4. 피감사기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하였을 경우 경고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.
- 5. 피감사기구 중 참석이 필요한 자가 불참하였을 경우 주의의 징계에 처하고, 2차 불참하였을 경우 경고의 징계를 가산한다.
- 6. 실제지출비용이 예상소요비용 대비 $\pm 10\%$ 이상 차이 날 경우 소명절차를 거친다. 단,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.
- 7. 예산의 집행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우 주의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.
- 8. 사업의 집행이 규정에 어긋난 경우 주의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.
- 9. 감사 자료 및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에 처하고, 2차 불응하였을 경우 경고 이상에 처한다.
- 10. 집행부서장들의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주의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.
- 11. 현금인출 및 운용을 하는 경우 경고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.
- 12.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계좌를 운용하는 경우 경고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.
- 13.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서는 감특위의 의결에 따른다.

제26조(징계내용) 징계는 다음의 단계로 구분되며 누적 적용된다.

- 1. 주의: 주의를 받은 횟수가 3회가 되는 시점은 경고 1회로 대처한다.
- 2. 경고 : 경고의 횟수가 2회가 되는 시점부터 예산정지 2주를 시작하며, 이후 누적된 경고에 대하여서는 감특위의 의결에 따른다. 한 학기 기준으로 경고 3회인 경우에는 예산 회수, 해당자치기구장 탄핵, 물질적 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.
- 3. 물질적 보상: 모든 집행금과 비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들은 학우들의 것이므로 손실을 가져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. 수익성 사업 역시 예산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.
- 4. 예산집행정지 : 2주, 3주, 4주, 5주, 6주, 7주, 8주, 무기한
- 5. 예산회수
- 6. 집행부의 해산 및 집행부원 해임
- 7. 중앙자치기구(총학생회, 총대의원회, 교지편집위원회, 총동아리연합회, 각 소속기구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단과대학 자치기구(단과대학 학생회, 대의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경고 3회의 징계 시 해당자치기구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8. 해당 자치기구장에 대한 탄핵발의
- 9. 피감사기구에 대한 학칙에 의한 처벌요구 및 형사 고발
- 10. 제3호의 물질적 보상부터의 징계내용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적용 가능하다.
- 제27조(발효) 본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해당 피감사기구에게 징계 결과가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되어야 하며, 통보되는 날로부터 발효된다. 단, 제26조제9호의 경우는 본회에서 의결 직후에 발효된다.
- 제28조(이의제기) ① 피감사기구 및 대상자의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징계가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피감사기구의 장 및 대상자가 직접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회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. 단, 이의제기를 제출한 피감사기구는 해당 분기 감사결과공고문이 부착된 이후에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

제5장 규칙

제29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0조(개정발의) 이 세칙의 개정 발의는 총 상임위원 과반수 또는 총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발의한다.

제31조(개정) 개정 발의된 세칙은 총 상임위원 2/3 이상 또는 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효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2019.5.22., 일부개정]

[2019.2.20., 일부개정]

[2018.2.8., 일부개정]

[2017.4.12., 일부개정]

[2016.4.14., 일부개정]

[2016.2.11., 일부개정]

[감사시행세칙 제2호, 2015.1.26., 전부개정]

[2014.1.27., 일부개정]

